

제 618 호

1977. 7. 7

발행인: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

편집: 문화공보관 조 용 하

전화 75-7834

인쇄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5444

# 시 보

차 례

◎ 규 칙

- 제 1707호 서울특별시구출장소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..... 3
- 제 1708호 서울특별시의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..... 3
- 제 1709호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..... 4
- 제 1710호 서울특별시립병원 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..... 8

◎ 고 시

- 제 204호 도시계획시설(학교)지적승안..... 8
- 제 205호 도시계획시설(학교)결정..... 8
- 제 206호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결정및지적승안..... 9
- 제 207호 도시계획사업(공항)실시계획인가..... 9
- 제 208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..... 10
- 제 209호 도시계획시설(광장)일부변경및지적승안..... 11
- 제 210호 도시계획시설(도트)신설변경및결정..... 11
- 제 211호 도시계획시설(학교)결정및지적승안..... 12
- 제 212호 도시계획시설(수도)결정및지적승안..... 12
- 제 213호 농촌지도소지소명칭및관할구역변경신고..... 13
- 제 214호 도시계획시설(공원)실효고사..... 14
- 제 215호 도시계획시설(광장)실효고사..... 17

(이면계속)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# 서울특별시

1840

제 216 호 도시계획시설 ( 도로 ) 결정 및 변경 .....	18
제 217 호 도시계획시설 ( 도로 ) 결정 및 변경 .....	18
제 218 호 도시계획시설 ( 도로 ) 변경 및 지적승인 .....	19
제 219 호 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시행허가 .....	19
제 220 호 도시계획시설 ( 도로 ) 지적승인 .....	20
제 221 호 도시계획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 .....	21
제 222 호 도시계획시설 ( 도로 ) 결정 .....	22
제 224 호 도시계획시설 ( 주차장 ) 결정 및 지적승인 .....	22
○ 공 고	
제 149 호 도시계획시설 ( 학교 ) 사업시행자 지적승인 .....	23
제 150 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( 기간연기 ) 인가공고 .....	24
제 151 호 환지계획 변경공장공고 .....	24
제 152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대체지정공고 .....	25
제 154 호 서울특별시도로굴착 승인신청공고 .....	25
✓ 제 157 호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.....	26
제 158 호 반도특정가구정비지구건축계획일부 변경공람 .....	26
제 159 호 환지계획일부 변경 공람공고 .....	27
제 160 호 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 및 지정공고 .....	27
제 161 호 도시계획사업 ( 공용의청사 ) 실시계획공람공고 .....	28
제 398 호 ( 도봉구 공고 ) : 공인개각공고 .....	35
○ 예 규	
제 360 호 서울특별시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사무처리요령 .....	36
제 362 호 대공업부 성적명정 요강 .....	54
○ 사 명	

**규 칙**

서울특별시 구출장소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 
1977년 7월 7일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707 호

서울특별시구출장소사무분장  
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구출장소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8 조 제 3 항 제 1 호중 마목을 차목으로하고, 마목내지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도시계획시설중 운동장, 학교, 도로, 주차장, 하천, 하수도, 시장, 오물처리장의 조사입안 및 지적고시에 관한 사항

바.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중 어린이공원의 지적고시에 관한 사항  
사.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안,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

자.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허가  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 
1977. 7. 7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708 호

서울특별시의구사무분장  
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제 2 항 제 1 호중 마목을 삭제하고, 동조항 제 2 호중 아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.

제 4 조 제 2 항 제 2 호중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국민대축및 국제

제 11 조 제 2 항 제 2 호중 바목을 다음과 같이한다.

바. 진개차 사고처리

제 13 조 제 2 항 제 1 호중 마목을 사목으로 하고, 마목내지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도시계획시설중 운동장, 학교, 도로, 주차장, 하천, 하수도, 시장, 오물처리장의 조사입안 및 지적고시에 관한 사항

바.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중  
어린이공원의 지적고시에 관한  
사항

사.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

아.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 시행  
허가

자.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허가  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  
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

1977년 7월 7일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1709 호

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 
같이 개정한다.

제 53 조 제 1 항중 "소방경정, 소방경  
감 또는 소방경"을 "소방경정또는  
지방소방령"으로하고, 동조제 2 항중  
제 1 호 및 제 2 호를 각각 다음과  
같이한다.

1. 행 정

가. 소방공무원의 교육, 인사 및  
조직관리

나.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

다. 연금 및 직원후생에 관한  
사항

라. 소방공무원의 복무

마. 보안, 청중단속 및 당직

바. 의식 및 회의

사. 순찰 및 순서에 관한 사항

아. 기타 본부내 다른과 및 파내  
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  
는 사항

2. 기 획 제

가. 소방행정제도의 연구에 관한  
사항

나. 기본운영 계획 및 심사분석

다. 소방 예산의 편성, 집행 및  
감독

라. 세입세출 및 현금출납

마. 물품의 출납 및 보관관리

바. 소방력의 기준책정에 관한  
사항

사. 소방관할 구역의 책정

<p>아. 소방관복제에 관한 사항        자. 소방관서 시설의 관리유지</p> <p>제 54 조 제 1 항중 "계장 및 실장은 소방경정, 소방경감 또는 소방경"을 "계장은 소방경정 또는 지방소방령으로 지령실장은 소방경감 또는 지방소방경"으로 하며 동조제 2 항 제 1 호중 사목을 카목으로 하고 사목내지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사. 화재현장조사 및 처리        아. 화재봉제 및 원인분석        자. 방어 검토회에 관한 사항        차. 화재증명에 관한 사항</p> <p>제 54 조 제 2 항 제 2 호중 나목을 삭제하고, 다목을 나목으로 하고 동조항제 3 호중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다목내지 마목을 삭제한다.</p> <p>나. 소방서 조사업무의 지도감독</p> <p>제 54 조의 2 제 1 항중 "소방경정, 소방경감 또는 소방경"을 "소방경정 또는 지방소방령"으로 한다.</p> <p>제 68 조 내지 제 70 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</p>	<p>제 68 조 (운수행정과) ①운수행정과에 운수행정제와 운수기획제를 두고,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 ②운수행정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운수행정제        가. 국소권행정의 종합조정        나. 운수행정의 종합조정 및 통제        다. 수송동원에 관한 사항        라. 국내다른과 및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</p> <p>2. 운수기획제        가. 운수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        나. 교통량의 조사 및 교통대책에 관한사항</p> <p>제 69 조 (운수1과) ①운수1과에 운수1계와 운수2계를 두고, 계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. ②운수1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각호와 같다.</p> <p>1. 운수1계        가. 노선업종자동차 운송사업의</p>
---	---

<p>주송계획수립 및 시행</p> <p>나. 노선업종 자동차 운송사업의 인.허가</p> <p>다. 자가용자동차(버스)유상 운송허가에 관한 사항</p> <p>라. 노선업종의 자동차 운송사업 조합 및 운송사업체의 지도 감독</p> <p>마. 노선업종의 운임과 요금에 관한 사항</p> <p>바. 정유소의 조정 및 버스터미널에 관한 사항</p> <p>사. 기타 노선업종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</p> <p>아. 과내 다른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</p> <p>2. 운수 2 계</p> <p>가. 구역업종(용달, 화물제외) 자동차운송사업의 수송계획수립 및 시행</p> <p>나. 구역업종(용달, 화물제외) 자동차 운송사업의 인.허가</p> <p>다. 자가용 소형자동차(25인승 이하)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사항</p> <p>라. 구역업종(용달, 화물제외)의 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</p>	<p>업체의 지도감독</p> <p>마. 구역업종(용달, 화물제외)의 운임과 요금에 관한 사항</p> <p>바.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사항</p> <p>사. 택시 승차대의 관리</p> <p>아. 기타 구역업종(용달, 화물제외)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</p> <p>제 70 조 (운수 2 과) ①운수 2 과에 운영계, 정비계, 지도 1 계와 지도 2 계를 두고, 운영계장, 지도 1 계장과 지도 2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, 정비계장은 기계기좌 또는 지방기계기좌로 보한다.</p> <p>②운수 2 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운 영 계</p> <p>가. 구역업종(용달, 화물에 한함) 자동차운송사업의 수송계획수립 및 시행</p> <p>나. 구역업종(용달, 화물에 한함) 자동차 운송사업의 인.허가</p> <p>다. 구역업종(용달, 화물에 한함)의 자동차 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체의 지도 감독</p> <p>라. 구역업종(용달, 화물에 한함)의 운임과 요금에 관한 사항</p> <p>마. 창고업에 관한 사항</p>
---	---

<p>바. 화물터미날에 관한 사항</p> <p>사. 기타 구역업종 (용달, 화물에 한함)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</p> <p>아. 자동차 운송알선사업에 관한 사항</p> <p>자. 자동차 등록에 관한 계획 및 조정</p> <p>차. 노선화물에 관한 사항</p> <p>카.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의 지도 감독</p> <p>타.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</p> <p>2. 정비제</p> <p>가. 보안기준 및 구조기준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검사장의 지도감독</p> <p>다. 차량정비사업의 계획 및 조정</p> <p>라. 차량정비에 관한 기술상의 지도감독</p> <p>마. 자동차정비사업체의 인.허가 및 지도감독</p> <p>바. 자동차 정비사의 자격시험</p> <p>사. 자동차정비사 양성학원의 지정 및 지도감독</p> <p>아. 정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</p> <p>자.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기록부의 관리</p>	<p>차. 정비사업진흥회의 지도감독</p> <p>3. 지도1제</p> <p>가. 노선업종 자동차운송사업체 종사원의 취업관리 및 교양, 훈련과 표창</p> <p>나. 노선업종 차량의 운행지도감독 및 서비스 개선</p> <p>다. 노선업종 법령위반차량의 행정처분</p> <p>라. 교통민원 신고센터의 종합관리 및 운영</p> <p>마. 노선업종 자동차의 운행증 및 보험에 관한 사항</p> <p>바. 매연차량의 단속</p> <p>4. 지도2제</p> <p>가. 구역업종 자동차 운송사업체 종사원의 취업관리 및 교양, 훈련과 표창</p> <p>나. 구역업종 차량의 운행지도 단속과 법령위반차량의 행정처분</p> <p>다. 차량의 서비스 개선 및 교통민원신고의 처리</p> <p>부 칙</p> <p>이 규칙은 1977.5.22부터 적용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립병원사무분장규칙중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</p> <p>1977년 7월 7일</p>
--	---

<p>◎ 서울특별시규칙 제 1710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립병원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</p> <p>서울특별시립병원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 2 조 제 1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다만, 강남병원의 제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           칙</p> <p>이 규칙은 1977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.</p>	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 10px;">고</td> <td style="padding: 2px 10px;">시</td> </tr> </table> 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04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 학교 ) 지적승인</p> <p>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 학교 ) 을 다음과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제 41 호 ( 77.3.16 ) 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양서출장소 도시정비과와 서울특별시 시민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77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장</p>	고	시
고	시		

도시계획시설 ( 학교 ) 지적승인조서

구분	시 설 명	위            치	면            적	비            고
신 설	학            교 (신월중고등학교)	영등포구신월동산 10 의 2 필	37.159 (11,238.3평)	

별첨 :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05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시계획시설 ( 학교 ) 결정</p> <p>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 학교 )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( 77.3.16 )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</p>	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도봉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77. 7. 1 서울특별시장</p>
--	---



가. 도시계획시설(학교)결정조서				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설	학 교 (염광중학교)	도봉구월계동산 89 의 8 의 3 필지	15,970 ㎡ (4,831평)	
별첨 : 도면생략  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06 호 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 결정 및 지적승인  1.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요청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 4 건설부고시제 41 호(77.3.16)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결정 및 지적  승인한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권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  1977. 7. 2  서울특별시 장  ○ 신설조서				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적 또는 규모	비 고
신설	154KV 광장 분기 송전선로	154KV 광장변전소(광장동) -기설 화양송전선로 (중곡동)	연장 3,153 Km 철탑 12기	
별첨 : 도면표시와 갑음(도면생략)  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07 호  도시계획사업(공항) 실시계획인가  1. 서울특별시고시제 152 호(76.6.30)로 도시계획시설(공항)결정 및 지적승인한 김포국제공항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 건설부고시제 41 호(77.3.16)의 권한 위임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(공항)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도시계획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거 이물 표시 한다. 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의				

양서출장소 시민봉사실및 사업시행자인 항공건설사무소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

1977. 7. 2

서울특별시

- 1. 사업시행지 : 영등포구 공항동85-11의 56 필, 영등포구 의발산동 350-20의 4 필, 영등포구 과해동 284-1의 5 필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공항) 실시 계획인가 김포국제공항 확장공사
- 3. 사업시행면적 : 1,311,904 ㎡
- 4.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해동산 4번지 항공건설사무소장
- 5. 사업착수 준공예정일
  - 가. 착수년월일 : 사업실시계획 인가일
  - 나. 준공예정일 : 1979. 12. 30
-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(별첨) (첨부생략)

○ 도로결정조서
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제 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, 성명 (별첨) (첨부생략)

㉔ 서울특별시고시제 208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결정

- 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제 41호 (77. 3. 16) 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7. 7. 6

서울특별시

구분	등급	류별	폭원	연 장	시 점	중 점	비 고
신설	소로	3	6 ⅓	40 ⅓	신당 5 동 287-30	신당 5 동 286-41	
"	"	3	6 "	50 "	" 287-4	" 286-28	

별첨 : 도면표시와갈음 (도면생략)

○ 서울특별시 고시제 209 호

도시계획시설(광장) 일부 변경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(광장)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및 지적승인 하얏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건설부 고시 제41호(1977.3.16)의 권한 위임 규정

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7.7.6

서울특별시 장

○ 광장 일부 변경 및 지적승인

구분	시설종류	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 비 고
기정	교통광장	50 호	시흥광장	가리 봉동 산 53 일대	69,550
변경	"	"	"	"	70,375

\*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○ 서울특별시 고시제 210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신설 변경 및 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일부변경 하얏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건설부 고시제 41호(1977.3.16)의 권한 위임

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7.7.6

서울특별시 장

○ 도로 신설 변경 조서

구분	등급	유별	폭원	연 장	시 점	중 점	비 고
기정	소로	4	4	180m	신림동 763 - 10	신림동 750 - 1	폭원 확장
변경	"	3	6	"	"	"	
신설	"	"	"	54"	신림동 749 - 4	신림동 746	
"	"	"	"	180"	신림동 757 - 7	신림동 758	
"	"	"	"	80"	신림동 727 - 1	신림동 730 - 1	
"	"	"	"	140"	신림동 752 - 2	신림동 747	

\*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<p>○ 서울특별 시고 시제 211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학교) 결정 및 지적승인</p> <p>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 (학교)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같은 법제 13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호 가. 도시계획시설 (학교) 결정 및 지적 승인 조서</p>	<p>규정에 외거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성북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77.7.7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
---	--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설	학 교 (동덕여자대학)	성북구 하월곡동 23-1 의 25 필지	43,438㎡ (13,140명)	

별첨 도면 생략

<p>○ 서울특별 시고 시제 212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수도) 결정 및 지적승인</p> <p>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 (수도)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호 ('77.3.16) 가. 수도용지 결정 및 지적 승인 조서</p>	<p>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77.7.7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
---	---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설	수 도	서대문구 홍은동 4-13 일대	508.2㎡ (154 명)	홍은동 가압펌프장
•	•	성동구 광장동 산 12 일대	2,989.8㎡ (906 명)	워커힐 건용 수도 용지

\*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 생략)

<p>○ 서울특별시고시제 213 호                  농촌지도소지소명칭및                  관할구역변경고시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직제에 관한                  규칙 제 2 조 2 항에 의하여 농촌지                  다</p>	<p>지도 지소명칭 및 관할구역을 다음                  과 같이 변경 고시한다.                  1977.7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                 을</p>
<p>변 경 전</p>	<p>변 경 후</p>
<p>가. 명칭 :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동부                  지소                  위치 : 서울특별시 송구 산림동                  289번지                  관할구역 : 서울특별시 성동구                  천호출장소 지역                  나. 명칭 :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                 남부지소                  위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                 338번지                  관할구역 :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              (천호출장소제외) 관악구                  다. 명칭 :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                 서부지소                  위치 : 서울특별시 관악구                  노량진동 156~1번지                  관할구역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              양서, 은평출장소, 마포구                  라. 명칭 :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                 북부지소                  위치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               신설동 97번지                  관할구역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               성북구, 도봉구</p>	<p>가. 명칭 :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                 동북지소                  위치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               신설동 97번지                  관할구역 : 성동구, 성북구, 동대문구                  도봉구, 천호출장소                  나. 명칭 :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                 남부지소                  위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                 92~6번지                  관할구역 :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              (천호출장소제외) 관악구                  다. 명칭 :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                 서부지소                  위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              곡동 405~233                  관할구역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              마포구, 양서, 은평출장소</p>
<p>※ 동부, 북부지소를 통합하여 1개지소로 함.</p>	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214호  
 도시계획시설(공원)실요고시  
 1. 별첨 조서와 같이 건설부 고시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(공원)에 대하여 지적 승인 시도가 만료 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 14 조에 의거 실요 고시한다.  
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  
 1977.7.8  
 서울특별시장

공 원 결 설 조 서

번호	공원의종류	공원명	위 치	면 적 (㎡)	비 고
1	자연공원	도봉산공원	도봉, 쌍문, 빙학	7,672,672	전고시제 465호('71.8.6) 결정고시 서고시제 71호('74.5.31) 지적고시
2	"	수락산	상 계	6,305,700	"
3	근린공원	상계 "	"	96,700	"
4	보통 "	불암 "	상계, 중계	2,697,537	"
5	"	태능 "	태 능	1,729,168	전고시제 465호('71.8.6)
6	"	중계 "	중계, 하계	146,229	"
7	"	길동 "	명일동, 길동	513,000	"
8	근린공원	대모 "	개포, 수서, 일원	112,478	"
9	보통 "	막계 "	막계, 주암	15,123,500	"
10	근린 "	주암 "	주암	92,776	"
11	보통 "	우미산 "	우면, 서초, 양재	416,474	"
12	근린 "	우면산 "	우면	63,750	"
13	"	남태평 "	하리	112,946	"

구분	공원의종류	공원명	위치	면적 (㎡)	비고
14	자연공원	관악산 공원	신림, 시흥, 사당 봉천	15,946,640	전고시제 465 호 ('71.8.6)
15	보통	신림	신림	395,239	"
16	근린	시흥	시흥	84,748	"
17	"	독산	신림, 독산	116,735	"
18	자연	구름산	하간	674,466	"
19	"	도덕산	철산, 광명	1,445,088	"
20	보통	은수	은수, 궁동	1,997,650	"
21	"	개봉	신정, 개봉, 궁동	277,770	"
22	근린	신정	신정, 개봉	148,474	"
23	보통	천왕	천왕, 오류	187,860	전고시제 465 호 ('71.8.6) 서고시제 71 호 ('74.5.31)
24	"	망월	향동리, 덕은리	1,204,394	"
25	"	봉산	갈현, 구산, 역촌	1,584,507	전고시제 10 호 ('67.1.16)
26	"	구파발	송두, 구파발	2,013,831	전고시제 455 호 ('71.8.6) 서고시제 71 호 ('74.5.31)
27	근린	신도	구파발	97,068	서고시제 32 호 ('74.3.27)
28	"	동산	동산리	146,123	서고시제 71 호 ('74.5.31)
29	자연	신도	지축, 오금	5,850,000	서고시제 32 호 ('74.3.27)
30	보통	봉화	신내, 숫화	396,560	전고시제 465 호 ('71.8.6)
31	근린	쌍문	쌍문, 방학	52,844	"
32	자연	월계	월계, 창동	442,000	"
33	"	월곡	월곡, 미아	1,065,478	전고시제 10 호 ('67.1.16)
34	보통	진관	진관내리	999,792	전고시제 71 호 ('71.8.6)
35	근린	갈현	진관외리, 갈현	157,124	"
36	보통	개화계 공원	개화, 방화	386,500	"
37	근린	가양 공원	가양	56,692	"
38	"	염창	염창동	40,532	"

구분	공원의종류	공원명	위 치	면적(㎡)	비 고
39	근린공원	무장공원	내발산, 동촌	213,072	전고시제 71호('71.8.6)
40	보통	화곡	화곡, 무동	732,300	"
41	근린	목동제1공원	목동	140,582	"
42	"	고척공원	신정동	47,785	"
43	보통	신정	"	487,313	"
44	근린	항동	항동, 오류동	46,122	"
45	"	오류	오류, 개포동	388,440	"
46	보통	상도	상도, 흑석동	134,200	"
47	"	방배	방배동	148,800	"
48	"	봉천도토공원	봉천동, 사당동	420,000	"
49	근린	봉천	신림, 봉천동	76,000	"
50	"	고덕	고덕동	112,398	전고시제 465호('71.8.6)
51	"	명일	명일동	424,725	"
52	"	천마	마천동	195,580	"
53	"	세곡제2	세곡동	98,417	"
54	"	세곡제1	세곡, 지곡동	101,513	"
55	"	대왕공원	수서, 일원	239,512	"
56	보통	봉은	청담, 삼성	59,302	"
57	근린	청담	청담동	59,302	"
58	보통	삼성	학동, 청담, 논현	242,272	"
59	근린	학동	학동, 논현	29,974	"
60	"	도산	신사, 논현동	29,974	"
61	"	역삼	역삼, 삼성동	36,784	"
62	"	도곡	도곡동	144,220	"
63	"	양재	양재, 서초동	106,476	"



구분	공원의종류	공원명	위 치	면적 (㎡)	비 고
64	보통공원	서초공원	빙매, 서초, 반포	952,520	건교시제 465 호('71.8.6)
65	근린	반포	반포	32,500	"
66	"	하촌	오금리	131,164	"
67	보통	지정	오금, 동산리	632,816	"
68	근린	신정현	기정리	17,522	"
69	"	덕은	덕은리	57,800	"
70	보통	대덕	덕은리, 현천리	291,468	"
71	근린	오정	학동, 원송리	62,238	"
72	"	하안	하안리	25,866	"
73	"	봉두	봉두리	114,256	"
74	묘지	망우묘지	망우동	633,958	"

○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5 호

도시계획시설(광장)실효고시

1. 건설부 고시 제 395 호('72.9.1)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광장)에 대하여 지적승인 시효가 만료 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 1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

○ 실효 시설 조서

( '77.3.16 ) 에 의거 실효고시한다.

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

1977.7.8

서울특별시 장

시설명	광장번호	위 치	면 적	비 고
교통광장	39	행 당 동	23,140	

•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. 끝

**○ 서울특별시고시제 216 호**  
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및변경  
 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변경 결정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의 규정 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(77.3.16)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 가, 도로 신설 및 변경 결정 조서

를 고시한다.  
 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 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 
 1977.7.9  
 서울특별시장

구분	등급	류별	폭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 고
기정	소로	2	8	248	광장동 248 - 4	광장동 244 - 1	위치일부변경
변경	"	"	8	"	"	" 241 - 1	
신설	"	3	6	126	" 247	" 244 - 1	
"	"	"	"	70	" 244 - 2	" 244 - 1	
"	"	"	"	86	" 550	" "	
"	"	"	"	75	" 385 - 1	" 258 - 1	
"	"	"	"	96	" 385 - 1	" 258 - 1	
"	"	"	"	"	"	"	

\*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**○ 서울특별시고시제 217 호**  
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및변경  
 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(도로)을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(77.3.16)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결 정 및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 인에게 보입니다.  
 1977.7.12  
 서울특별시장

노 선 조 서								
구분	등급	유별	번호	폭원(㎞)	연장(㎞)	기 점	종 점	비 고
기정	중로	2		15	160	갈월동 44-12	갈월동 파출소	원효로폭상
변경	"	2		15	160	"	"	줄다니입구
신설	소로	1		10	230	담십리동 495	담십리동 483	가각진세
신설	"	2		8	50	" 484	" 322	

별첨 :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18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 
변경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을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1호

(77.3.16) 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7. 7. 12

서울특별시강

도로변경 및 지적승인조서

구분	등급	유별	번호	폭원	연장	시 기	종 점	비 고
기정	대로	3	39	25	2,450	이 아 동	번 동	
변경	"	"	"	"	"	"	"	강위동 21일대약250년경

별첨 :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19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110 호 (74.8.9) 로 사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

시계획시설 (학교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을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호 (77.3.16) 의 규정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7. 7. 12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신촌동산 2의 1의 1필지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이화대학교 교지 조성공사

3.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: 6,561평방미터 ( 1,985명 )

담장축조 : 높이 2미터

연장 1,616미터

4. 사업시행자 주소·성명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대현동 11의 1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김영외
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가. 착수년월일 : 시행허가일로부터 1주일 이내

나. 준공예정일 : 78. 6. 30

6.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지적, 소유권 권리명세

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유권
서대문구신촌동	산 2의 1	임야	756평	학교법인 이화학당
· 북아현동	산 1의 1	·	1,129평	·
계			1,985평	

별첨 : 도 면 생 략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20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210호(77. 7. 6)로 시설결정 및 일부변경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조

및 건설부고시 제 41호(77. 3. 16)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7. 7. 12

서울특별시장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조서							
구분	등급	유번	폭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 고
기정	소로	4	4 m	180 m	신림동 763-10	신림동 750-1	특원확장
변경	"	3	6 m	180 m	" "	" "	
신설	"	3	6 m	54 m	" 749-4	" 746	
"	"	3	6 m	180 m	" 757-7	" 758	
"	"	3	6 m	80 m	" 727-7	" 747	
"	"	3	6 m	140 m	" 752-2	" 747	
<p>별첨 : 도면표시와 갈음 (도면생략)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21 호</p> <p>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결정</p> <p>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(77.3.16) 규정에</p> </div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외거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77. 7. 12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장</p> </div> </div> <p>가.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조서</p>							
구분	단지명	위치			면적	비고	
신설	철거민정착단지	영등포구 시부동 산 136-2			24,693 (7,470평)		
"	이찬순단지	관악구신림동산 116 - 1의 1필지			16,946 (5,126평)		
"	신인우단지	관악구 신림동 산 169-2			19,609 (5,932평)		
"	박병규단지	관악구신림동산 1-7 의 3필지			21,213 (6,417평)		
별첨 : 도 면 생 략							

**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22 호**  
 도시계획시설 (도로) 결정  
 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 계획법 제 12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( 77.3.16 ) 의 권한위임에  
 의거 이를 고시한다.  
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인다.  
 1977. 7. 13  
 서울특별시 장  
 • 도로결정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목원	연장	시 점	중 점	비고
신설	소로	1		10	280	중암동 25-12	중암동 32	
"	"	1		10	120	" 24	" 23-3	
"	"	2		8	100	" 29-4	" 32-1	
"	"	3		6	470	" 25-4	" 32-1	
"	"	3		6	200	" 25-4	" 24-1	
"	"	3		6	80	" 23-3	" 31-1	
"	"	3		6	210	" 34-1	" 31-1	
"	"	3		6	220	" 산 2-21	" 31	
"	"	3		6	180	" 산 2-21	" 31	

별첨 :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**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24 호**  
 도시계획시설 (주차장) 결정 및 지적승인  
 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주차장)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 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( 77.3.16 ) 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  
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

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7. 7. 13

서울특별시장

•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신설	화물주차장	영등포구양명동 4가 3~4일대	약 2,345평	전국트럭터미날

별첨 :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**공 고**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49 호

도시계획시설 ( 학교 ) 사업  
시행자 지정 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51 호 (77.5.17) 로 도시계획시설 ( 학교 ) 결정 및 지적승인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동 113번지일대 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가. 조 서

제 23 조 제 5 항 및 건설부고시 번 41 호 (77.3.16)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승인을 하였기 이를 공고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정비과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관재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7. 7. 4

서울특별시장

구분	명칭	사업시행지	면적	시행자
도시계획시설 ( 학교 )	중 학교 ( 신설 )	영등포구구로동 113 번지 일대	7,753.1평	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

나. 승인 개요

- 1) 사업시행지 : 영등포구구로동 113 번지일대 7,753.1평

- 2) 사업종류 및 명칭 : 중학교신설
- 3) 사업시행자의 주소·성명 :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교육감

<p>4)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                가) 착수년월일 : 사업실시계획인가                  일로부터                  나) 준공예정일 : 착공일로부터 1년                  5) 위치도 : 도면생략</p> <p>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50 호</p> <p>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                 변경(기간연기)인가공고</p> <p>1. 건설부공고 제 29 호(75.2.14)로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 인가된 영동세 2지구 추                  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사업계획에                 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4조                 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</p>	<p>한 규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을 변경(기간연기) 인가                  되었기 이를 공고한다.</p> <p>2. 사업계획변경(기간연기) 인가도                  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                  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                에게 보인다.</p> <p>3. 본 공고사항은 토지소유자 및                 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는 아니                  하고 이 공고로 갈음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77. 7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장</p>
--	--

• 사업계획변경인가내역

지 구 명	인가면적	당 초	변 경	사업시행자
영동세 2 지구 추가	25,824평	75.2.14 ~ 76.12.31	75.2.14 ~ 78.12.31	서울특별시장

<p>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51 호</p> <p>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</p> <p>1. 영동세 2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                  구내 환지에정지중 일부 환지에정                  지에 대하여 환지계획변경사유가                  발생되었기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</p>	<p>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                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                 공람에 공한다.</p> <p>2. 환지계획변경도서는 도시정비국                 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                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.</p> <p>3. 본 공고사항을 토지소유자 및</p>
---	--



<p>이해 관계인에게 별도 서류 송달될 것이나, 미수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</p> <p>1977. 7.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 <p>&lt;환지계획 변경공람내역&gt; 가. 사업명 : 영동제 2 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나. 변경면적 : 63,470 평 다. 변경위치 : 강남구 삼성동 65-1 외 81 필지</p>	<p>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52 호</p> <p>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대체지정공고</p> <p>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 정업체 지정요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품 생산지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대체 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한다.</p> <p>1977. 7.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
--	--

1. 대체지정업체조서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	비 고
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생산제품 지정번호	삼진성유공업사 장국진 성동구성수동 2가 202-67 양말 470	한주실업공업사 장복진 성동구성수동 2가 273-1 양말 470	지번변경

<p>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54 호</p> <p>서울특별시도로굴착승인신청공고</p> <p>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를 굴착하여 지하시설물(상·하수도, 전 력, 전화, 케이블, 가스관 등)을 배</p>	<p>설코자 할 때에는 도로법 제 34 조 에 의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마땅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1. 신청대상 : 서울시행정구역내에 있는 모든도로의 굴착 2. 신청기간 : 77.7.1 ~ 77.7.31</p>
--	---

3. 구비서류 :

가. 신청서 2부 (본청 도로보수과 및 각구청 토목과에 비치)

나. 위치약도 : 2 부

4. 접수처 :

가. 공공기관 - 서울특별시도로보수과

나. 일반인 - 관할구청 토목과

5. 특 기 사 항

가. 위 기간내에 신청을 하고 공사시행시에는 별도로 당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나. 전기, 상수도, 하수도등 공공기관에 의뢰하여 도로를 굴착하게 되는 사항도 수용자인 일반인이 필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. 위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한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굴착승인을 할 수 없아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57 호

환지계획 변경 공람 공고

1. 영동계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예정지 (아파트지구) 중 일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 변경사유가 발생되었기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

법 제47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

2. 환지계획 변경도서는 도시정비지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3. 본 공고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서류 송달될 것이나, 미수령자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1977. 7.

서울특별시장

〈환지계획 변경 내역〉

가. 사업명 : 영동계 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

나. 변경 위치 : 강남구반포동 264-21의 109 필지

다. 변경면적 : 52,433.4 평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58 호

반도특정가구정비지구 건축계획 일부변경공람

서울특별시공고 제 268 호 (75.11.8)

로 확정된 반도특정가구정비지구 건축계획에 대하여 건축법 제 33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152조 규정에 의거 일부틀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니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중 빠짐없이 공람하시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. 공람사항 : 반도북정가구 정비지구  
건축계획중 한일은행  
건축계획 (별첨 설계도서  
:생략)
- 2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- 3. 장 소 : 당시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 
1977. 7.11  
서울특별시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59 호  
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

- 1. 서울특별시 신림, 신림추가, 화양  
추가, 경인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 
일부 토지에 대한 환지 계획을  
변경코자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 
47조 및 동법 제 55조 규정에  
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  
반에게 공람공고 합니다.
- 2. 환지계획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 
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 
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 
입니다.
- 3. 서류 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 및  
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것이나, 미수  
명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 
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

1977. 7. .

서울특별시

- 1) 사업명 : 신림, 신림추가, 화양  
추가, 경인토지, 구획  
정리사업
- 2) 변경내역 : 서울특별시 관악구  
신림동 일부 토지  
서울특별시 관악구 봉  
천동 일부 토지  
서울특별시 성동구  
구의동 일부 토지  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
화곡동 일부 토지
- 3) 필지수 : 48 필
- 4) 변경조서및도면 : 서울특별시 도  
시정비국 구획정리과  
에 비치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60 호  
환지계획 일부 변경  
인가 및 지정공고

- 1. 역촌, 도봉, 망우추가, 김포토지  
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 
대한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서울특  
별시 공고 제 135 호 (77.6.20) 로  
공람공고한바 있는 토지에 대하여  
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5조 및

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거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에 따라 환지에정지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
2. 환지에정지 지정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 및 출장소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냅니다.

3. 조서 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것이나, 미수령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서 갈음합니다.

1977. 7.  
서울특별시 장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61 호  
도시계획사업(공용의 청사) 실시계획 공람 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8 호( '76. 2. 13 )로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 시설(공용의 청사: 정부 종합청사) 용지인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냅니다.

1977. 7. 13  
서울특별시 장

1. 사업시행지: 종로구 적선동 184-29 부근

2. 사업의 종류: 도시계획사업(종합의 청사)  
명 칭: 정부종합청사

3. 사업의 규모:  
시행면적: 3,780 (1,145 평)

4.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 장

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년월일  
가. 사업착수일: '77년 7월  
나. 준공예정일: '77년 12월 15일
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
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 
관계인 주소, 성명

토 지 세 목 조 서

위 치	지번	지목	지적 (평)	면적 (평)	소 유 권 자		기 타 권 리 권 자			비 고
					주 소	성 명	권리명	주 소	성 명	
서울 종로구 적 선 동	180-1	대	7.1	7.1	동대문구휘경동 312-266 동대문구송인동 232-1	원 순 천 김 영 갑	전세권 가동기	종로구적선동 184 서대문구불광동 487-57	김 용 신 원 광 천	
	184-1	"	14.3	14.3	종로구적선동 184-1	전 순 욱	근저당	종로구사직동 322	김 흥 기	
	184-2	"	8	8	종로구적선동 184	김 치 순				
	184-3	"	12	12	종로구적선동 184-3	손 문 영				
	184-7	"	29.9	29.9	종로구적선동 184	김 치 순				
	184-8	"	4.0	4.0	종로구적선동 184-3	손 문 영				
	184-10	"	10.9	10.9	서대문구역촌 동 58-37	조 성 현	근저당	종로구전지동 68-4	한 신 화 운 행	
	185-2	"	46	46	종로구적선동 187	최 중 환				
	185-3	"	29.9	29.9	"	"				
	187-1	"	13.8	13.8	"	"				
	187-2	"	39.2	39.2	"	"				
	"	180-1	"	96	77.19		시우투빌사			

1854

제 613 호 시 보 1977.7.7 55-29

위 치	지 번	지 목	기 적 (坪)	편 입 기 적 (坪)	소 유 권 자		기 타 권 리 자			비 고
					주 소	성 명	권 리 명	주 소	성 명	
서울 종로구 적선동	188-2	도	80	39.87						
"	188	대	21	21	종로구적선동 188	황필상	근저당	종로구전지동 68-4	한신 신탁은행	
"	189-1	"	1	1	성북구수유동 291-84	이인구	가등기	용산구 원효로 2가 2-12	이영덕	
"	189-2	"	6.3	6.3	"	"				
"	189-3	"	19.4	19.4	"	"				
"	190-1	"	23.3	23.3	종로구적선동 190-1	한태선	근저당	관악구북석동 106-2	유충근	
"	190-2	"	1.7	1.7	종로구낙원동 164	송오섭				
"	190-3	"	4.7	4.7	종로구적선동 190-3	유재희				
"	190-4	"	4.7	4.7	종로구적선동 190-1	한태선				
"	190-5	"	8.6	8.6	종로구 낙원동 164	송오섭				
"	190-6	"	1.8	1.8	종로구적선동 190-3	유재희				
"	190-7	"	21.5	21.5	종로구적선동 190-3	유재희	가등기	영등포구 당산 강마루아파트 등 5C1	채영권	
"	190-8	"	21.7	21.7	종로구적선동 190	송오섭	가등기	마포구서교동 446-6	강운영	

56-30 제 613 호 시 보 1977.7.7

위 치	지 번	지 목	지 적 (평)	정 입 지 적 (평)	소 유 권 자		기 타 권 리 자			비 고
					주 소	성 명	권 리 명	주 소	성 명	
서울종로구 적선동	191-1	대	9.4	9.4	종로구적선동 191	이관휘				
"	194-2	"	39.7	39.7	종로구통외동 69-1	정인영				
"	195-4	"	4.5	4.5	종로구사직동 164-15	김정진				
"	195-5	"	6.9	6.9	종로구적선동 196	정인수				
"	196-1	"	5.8	5.3	"	정인수				
"	196-2	"	44.2	44.2	"	정인수				
"	197-1	"	11.8	11.8	종로구신문로 1가105	김중상	근저당	종로구신문로 1가105-1	김기상	
"	200-3	"	0.2	0.2	종로구도림동 26	김성자				
"	201-1	"	7.2	7.2	"	김성자	근저당	종로구남대문로 2가9-1	국민은행	
"	202-1	"	8.0	8.0	종로구적선동 28-2	남궁연	근저당	종로구남대문로 2가72-1	신협은행	
"	203-1	"	31.3	31.3	종로구수송동 208-2	남궁연	근저당	"	"	
"	203-3	"	0.3	0.3	"	남궁연	근저당	"	"	
"	203-4	"	1.0	1.0	"	남궁연	근저당	"	"	
"	204	"	10.0	10.0	종로구적선동 204	황기춘				
"	204-1	도	5.0	5.0	"	서울특별시				
"	206-1	대	10.8	10.8	관악구동작동 307	진동식	근저당	종로구견지동 68-4	한신은행	

위 치	지 번	지 목	지 적 (형)	점 입 지 적 (형)	소 유 권 자		기 타 권 리 자		비 고
					주 소	성 명	권 리 명	주 소	
서울 종로구 적선동	205-2	대	1.6	1.6	관악구동작동 307	진동식	근저당	종로구전지동 68-4	한신은행
	205-3	"	29.6	29.6	"	"	"	"	"
	206-1	"	17.0	17.0	종로구적석동 206	김형준 외 6명	"	"	"
	206-2	"	13.0	13.0	"	"	"	"	"
	207-1	"	25.8	25.8	서대문구남가 좌동 124-178	김성호	가등기	수원시지동 401	실규돈
	207-3	"	3.2	3.2	"	"	"	"	"
	81-1	도	901	36.04	"	신우 신우	"	"	"
	77-10	구	5.0	5.0	"	"	"	"	"
	77-11	도	72.0	57.2	"	"	"	"	"
	계	50 필지			872.4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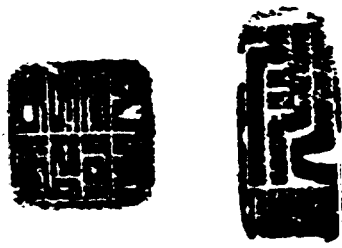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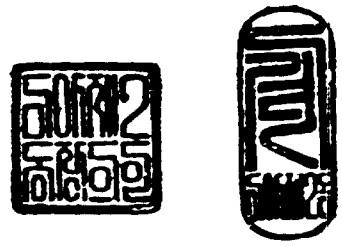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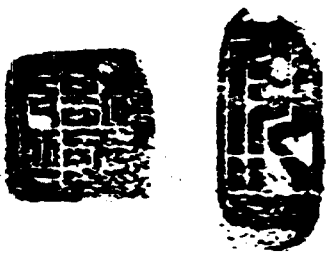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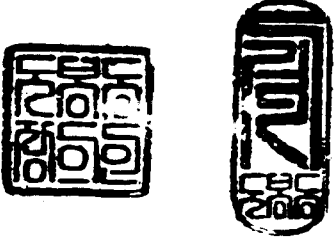
56-32 제 613 호 시 보 1977. 7. 7



건 물 세 목 조 서										
위 치	지 번	건 물 표 시			전 평	소 유 자		기 타 권 리 자		비 고
		구조	용도	지 붕	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	
서울특별시 중구 적선동	184	목조	주택	토기와	7.39 평	적선동 184	전순옥	사직동 3222	김 홍 기	가동기
								적선동 184	김 홍 식	전 세
	184외2	"	"	"	19 "	적선동 184외2	김치순			
	184외4	"	점포	시멘트 기와	10.77 "	충구무교동 6	조성현	견지동 68-4	신탁은행	근거남
	184 외 3	"	주택	토기와	11.25 "	적선동 184외3	손문영			16 명 중 일부
	183 외 2	"	"	"	7.42 "	적선동 183외2	방재식			
	179	"	"	"	26.75 "	적선동 187	최종환			
	180	"	"	"	12 "	송인동 232외1	원순천			과세대장상 6명:원순천 6명:김영부
	185	"	"	"	66 "	적선동 187	최종환			
	187	"	점포	"	23.46 "	"	"			
	188	"	주택	"	12.7 "	적선동 188	황내수			
	189	"	"	"	24 "	수유동 291-84	이인구			
	190외1	"	"	"	15 "	적선동 190외1	한비선			
	190 외 2	"	"	"	17 "	적선동 190외2	양오집			

위 치	지 번	건 물 표 시			건 평	소 유 자		기 타 권 리 자		비 고
		구조	용도	지 붕	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	
서울중로구 적선동	190의3				15평	적선동 190의3	유재희	영등포구 당산파 동 501호	채영권	가등기
"	191	세멘트 벽돌조	주택	시멘트 기와	11.55	적선동 191	이관휘			
"	193 )	철근 콘크리트		스라브	125.54	적선동 194	정인영			과세대장상 142.33 평
"	194 )	연와 철근콘크리트		"	24.07	적선동 196	정인수			
"	195의2 )	연와 철근콘크리트		"	75.92	신문로3가105	김종상			
"	196 )	목조		토기와	16					
"	197	목조		토기와	16					
"	200의1	철근 콘크리트	점포	스라브	67.02	도림동 26	김성자	중구남대문로 2가9	한국중앙 부동산회사	근저당
"	201의1	목조	주택	토기와	19	수송동 28-2	남궁현		신택은행	근저당
"	204	"	"	"	6.28	해부동 145-3	황기춘			
"	205	"	"	"	21	적선동 205	진동식			
"	206	목조 연와조	"	토기와 스라브	16명 17	적선동 206	김우술			
"	207	목조	"	토기와	15	남가좌동 124-178	김성호			
"	195의1	"	"	"	34	사직동 14-19	김정진			전입토지 면적 4.5평
계			27동		700.12	전평				대통령경호실공제

<p>○ 도 봉 구 공 고 제 398 호</p> <p>공 인 개 각 공 고</p> <p>다음과 같이 공인 및 재인을 폐기하고 개각 사용토록 하였거 이를 공고함.</p>	<p>1977. 7. 1</p> <p>도 봉 구 청 장</p> <p>1. 공인명 : 미아2동, 도봉동장 재인 및 재인</p> <p>2. 사용계시일시 : 77.7.4 09:00</p> <p>3. 공인의 인명 :</p>
---	--

동 명	폐 기 인 명	신 크 인 명
<p>미아제 2 동장 인 및 재 인</p>		
<p>도봉동장인 및 재 인</p>		

예 규

◎ 서울특별시예규 제 360 호

서울특별시소규모양곡가공업 허가사무처리요령

제 1 조 ( 목적 )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 16 조 및 동시행령 ( 이하 ' 시행령 ' 이라 한다 )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양곡가공업의 허가사무처리절차를 명백화하여 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양곡가공공장의 시설개선과 가공종산 ( 간지종산 ) 및 가공공장의 남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 용어의 정의 ) 이 요령에서 양곡가공업이라 함은 시행령별표 2 의 대규모 양곡가공공장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양곡가공공장 ( 임도정 ) 과 세분공장을 말한다.

제 3 조 ( 시설기준 ) ① 소규모양곡가공공장 ( 임도정공장 ) 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.

- 1. 대지 : 50 평이상 ( 165 평방미터 )
- 2. 건물 : 15 평이상 ( 49.5 평방미터 )  
연화, 합석, 스페르, 콘크리트 스타보조,
- 3. 원동기 : 발동기 - 10 마력이상

30 마력미만

전동기 - 10 마력이상

4. 정미시설기준

- 가. 원로 정선장치 탈입 및 물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계 1 대이상
- 나. 석발풍구 1 대이상
- 다. 제현장치 원미기 1 대이상
- 라. 왕겨풍구 1 대이상
- 마. 만 석 기 1 대이상
- 바. 축선만석기 1 대이상
- 사. 정미장치 1 대이상
- 아. 기타 정미부속시설 일체

5. 정맥시설기준

- 가. 우수정맥기 1 대이상
- 나. 정맥기 1 대이상
- 다. 기타 정맥부속시설 일체

6. 압맥시설기준

- 가. 보 일 리 1 대이상
- 나. 가 열 기 1 대이상
- 다. 압 편 기 1 대이상
- 라. 기타 필요한 시설

7. 미액혼합기 설치

② 소규모 세분공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.

- 1. 대지 :
- 2. 건물 : 9.7 평이상 ( 30 평 )

3. 정선장치 : 수세, 탈수 기타 원료정선기 1습이상

4. 분쇄장치 : 소형분쇄기, 6인치 로라, 소형제분, 소형기 각 1대이상

5. 부설장치 : 가투치는 채

6. 기타 제분부속시설 일체

③ 전 2항의 시설기준등 동일 공장내에 다른 시설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겸용 인정할 수 있다.

제 4조 (가공의 한계) 소규모양곡가공가공업자는 각 가정에서 제공하는 가공원료 (미류, 보리, 조, 수수, 콩, 혼합쌀)에 의하여 위탁가공만 할 수 있다.

제 5조 (설치기준) 소규모양곡가공공장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기존공장과의 거리가 최소한 500미터이상으로 정한다. 다만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신설시장이나 신생주택단지내의 시설이 부득이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 6조 (허가신청) ① 양곡가공업을 목적으로 소규모 양곡가공공

장을 경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서식에 의한 양곡가공업 허가신청서에 별지 제 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장 (출장소장 포함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허가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관계공부에 의거 대지 건물외 불법여부를 확인한후 승인요건 (설치기준, 시설기준)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설치를 승인하고 별지 제 3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.

③ 승인요건에 적합치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 4호서식에 의한 불허처분동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.

④ 양곡가공공장 승인처리에는 건축관계법령에 시속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⑤ 준공검사는 별지 제 6호서식에 의거 실시하며 양곡가공공장 설치 승인서에 의한 예정준공기간이 경과하여도 시설을 완비하지 아니하거나 준공후 1개월이내에 별지 제 5호서식

에 의한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⑥ 공장준공기한이 예정준공기한보다 지연될 때에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준공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시킬 수 있다.

⑦ 양곡가공업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시설설치 승인사항 일치여부를 시설조사서에 의거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제 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제신고처리) ① 양곡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가공공장의 시설을 증설, 개설, 이설(동일 구관내에 한함) 축소 합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 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때의 처리절차는 신규승인 및 허가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며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설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 
가. 도시계획사업 및 토지구획정리

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었을 때나, 500미터이내 기존업소의 동외서를 징구하였을 때

다. 주택지에서 시장내 점포로 이전할때

(신규허가후 2년이내 불가)

② 양곡가공업허가를 받은 자가 권리의무에 대한 양도 명의변경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관계 증빙서류 첨부하여 별지제 9호서식에 의한 명의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양곡가공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·시설의 철거 또는 재해로 인하여 공장시설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별지제 10호서식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④ 양곡가공업 허가를 받은자가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 11호서식에 의한 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. 휴업후 계속 6개월간 재개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허가는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 8 조 ( 제 신청처리기간 ) ① 제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은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.  
 ② 부득이 하여 전항의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신청인 ( 민원인 ) 에게 그 사유를 중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 기록 및 대장비치 ) ① 양목가공업자는 관계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합시 제시할 수 있도록 일별 취급량, 재고량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양목가공업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변동사항을 수시 정리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 행정처분 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목가공업소에 대하여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시설개선등을 명할 수 있다.

- 1. 양목관리법, 양목관리법시행령.

동시행규칙 및 이 요령에 위반된 때

2. 6월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을 중단한 때

3. 공해의 발생도가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막심할때

4. 허가된 양목가공공장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실, 철거, 소실, 파괴되었을 때

5. 도정질서 및 세분질서를 분란케 하여 주민으로부터 건축물

사 물의를 야기한 때

6. 기타 법령에 위기한 명령에 위반한 때

제 11 조 ( 보고 및 협조 ) ① 구청장은 양목가공업의 허가 및 폐업 휴업 기타 행정처분된 사항을 매분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 사무처리 ) 이 요령에서 규정한 행정처분 ( 승인, 허가등 ) 을 행할 시에는 시장의 직인을

<p>사건 날인하여 행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요령은 공포한 날</p>	<p>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경과조치) 이 요령 시행이전에 허가된 소규모 양곡가공공장(임도정공장, 계분공장)은 이 요령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본다.</p>
--	--



<별지제 1호서식>

양곡가공업허가신청서

1. 공장소재지

공장명칭

공장주주소

성명

주민등록  
번호

생년월일

성별 남  
외

대지

명

업종별

2. 설치승인번호

승인년월일

3. 설비규모 및 능력

① 건물

② 원동기

종별

종별

면적

형식

동수

규격

대수

기계명	종별	형식	규격	대수	마력	기타부대시설
정선장치	수세, 탈수					
분쇄장치	송현, 쇠불라					
부설장치	가무치는체					
계						

4. 착공년월일

준공년월일

위와같이 소규모 양곡가공공장을 설치하고 양곡가공업허가통 받고자 양곡관리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일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97 . . .

신청인주소

성명

㉞

< 필지제 2호서식 >

(전면)

사 업 계 획 서

- 1. 공장소재지  
 공장명칭  
 공장주소  
 성명  
 업종별  
 주민등록번호  
 생년월일  
 상별번호
- 2. 설립자금 현금 원 천불 원 계 원
- 3. 대지및건물 대지 평  
 공장 동 평  
 창고 동 평
- 4. 건물구조 지붕 조 벽 환기창구
- 5. 부락현황 호수 호 농가 호 비농가 호 인구수 명
- 6. 기설공장유무
- 7. 기설공장과의 거리 km
- 8. 기타사항
- 9. 사업내용

(1) 원료생산량 및 가동능력

(단위 : 조곡가마)

구분 곡종별	년평균생산량	예 정 량		생 산 능 력		비 고
		1일가공	연간가공	1일평균	연간평균	

<별지 제 3 호 서식>

양곡가 공공장 ( ) 승인서

양곡가 공공장 규모 구분

승인번호

호

공장소재지

공장명칭

대표작성명

승인사항

승인사유 및 내역 ( 별지 )

년 월 일자 귀출원에 대하여 양곡관리법 제 16 조의  
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승인함.

19 년 월 일

서울특별시장 귀하

< 별 지 >

내 역 서

1. 시설내역

- (1) 정미기
- (2) 정맥기
- (3) 계분기
- (4) 압맥기

2. 시설설치기간

착공년월일

준공년월일

< 별지 제 4 호서식 >

양곡가공업 ( ) 불허처분통지서

양곡가공공장규모구분

처분번호제

호

주 소

상호또는성명

처 분 사 항

처 분 사 유

년 월 일자 양곡가공공장출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이를 불허함.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

<별지제 5호서식>

준 공 신 고 서

1. 공장소재지

공장명칭

공장주주소

성명

대지

업종별

주민등록  
번호

생년  
월일

성별

평

2. 승인번호

승인년월일

3. 착공년월일

준공년월일

( 개월 )

( 일간 )

4. 시설규모 및 1일생산능력 ( 별지 )

위와 같이 양곡가공공장시설을 설계도서에 의거 준공하였기 이에 신고  
합니다.

19 . . .

신고자주소

성명

㉠

서울특별시장 귀하

<별지제 6호서식>

양 목 가 공 관 장 시 설 조 사 서

( 준 공 점 사 서 )

1. 공장소재지

공 장 명 칭

공 장 주 주 소

성 명

대 지

건 물

구 조

주 민 등 록  
번 호

평

생 년  
월 일

성 별 남  
여

조

집

동

명

2. 업 종 별

3. 허가번호 ( 승인번호 )

허가 ( 승인 ) 년월일

4. 종 업 원 계

명

사 무 원

명

기 술 자

명

인 부

명

5. 공장설비규모 및 능력 (업종별로 구분기재)

(1) 건물

(2) 원동기

(3) 10 시간연료

종 별

종 별

전 기

마 려

면 적

형 식

유 류

%

동 수

규 격

대 수

6. 1일 생산능력 ( 10 시간당 ) (업종별로 구분기재)

정 미 부 조 곡 ( 미 곡 )

가 마 ( k 입 )

맥 류 조 곡

가 마 ( k 입 )

정 맥 부 조 곡

"

"

"

"

"

계 분 부 조 곡

"

"

"

"

"

압 맥 부 조 곡

"

"

"

"

"

7.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면

8. 공해사항

9. 재력상황

10. 신 용 도

<별지 제 7 호 서식>

허 가 증

양곡가공공장규모구분

소규모허가면호번호

공장소재지

상 호

대표자성명

허가업종

허 가 주 요 시 설

종 별	형 식	규 격	대 수	종 별	형 식	규 격	대 수

19 년 월 일 양곡가공업

허가출원에 대하여 양곡관리법 제 16 조에 의거 위와같이 허가함.

19 . . .

서울특별시장 귀하

<별지제 8 호서식>

양곡가공공장 ( 증설 · 개선 · 이설 · 축소 ) 승인 신청서

1. 공장소재지

공장명칭

공장주주소

성명

주민등록  
번호

생년  
월일

성별  
남/여

대지

평

업종별

2. 허가번호

허가년월일

3. 증설 ( 개선 · 이설 · 축소 ) 코자 하는 장소

4. 증설 ( 개선 · 이설 · 축소 ) 코자 하는 사유

5. 시설규모 및 능력

기허가시설내역

이번 승인 신청후의 시설내역

증감

6. 착공년월일

준공년월일

위와같이 증설 ( 개선 · 이설 · 축소 ) 코자 관계일건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
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9 . . . . .

신청인주소

성명

㉑

서울특별시장 귀하

<첨부서류>

1. 동신청서

2. 구허가증

3. 설계도서 ( 증 · 개 · 이설 · 축소 ) 및 기계기구자재 시설명세서

4. 건축허가서 사본

5. 주민등록표 초본



<별지 제 8-1 호 서식>

양 목 가 공 공 장 합 설 승 인 신 청 서

1. 합설할 (이동) 공장소재지

공 장 명 칭

공 장 주 주 소

성 명

주민등록번호

생년월일

성 별

남  
여

대 지

업 종 별

허 가 번 호

허 가 년 월 일

2. 합설받을 공장소재지

공 장 명 칭

공 장 주 주 소

성 명

주민등록번호

생년월일

성 별

남  
여

대 지

업 종 별

허 가 번 호

허 가 년 월 일

3. 합설후의 시설규모 및 1일생산능력

합 설 전

합 설 후

증 감

기 계 명, 종 별, 형 식, 규 격, 대 수, 1 일 생 산 능 력, 기 계 명, 종 별, 형 식,

규 격, 대 수, 1 일 생 산 능 력

4. 합 설 이 유

위와 같이 합설코자 별지 관계 일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 
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9 . . .

신청인주소 (합설합이동자)

성 명

인

주소 (받는자)

성 명

인

서울특별시 장귀하

<첨부서류>

1. 동의신청서
2. 권리의무양도증 또는 매도증서매개계약서도가
3. 인감증명원 및 폐업신고서
4. 구허가증 및 합설설계도서

<별지 제 9 호서식>

권리의무양도명의 변경 승인 신청서

1. 공장소재지

공장명칭

당초공장주소

성명

주민등록번호

생년월일

성별

남  
여

대지

업종별

2. 허가번호

허가년월일

3. 권리의무양도 및 명의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

주소

성명

주민등록번호

생년월일

성별

남  
여

공장소재지

공장명칭

4. 변경사유

위와같이 양곡관리법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의거 권리의무양도 명칭변경승인을 받고자 관계일건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97 . . . . .

양도인 주소

성명

인

양수인 주소

성명

인

서울특별시 장귀하

<첨부서류>

- 1. 동신청서
- 2. 구허가증
- 3. 인감증명 (양도자)

<별지 제 10 호서식>

폐업 신고서

1. 공장소재지

공장명칭

공장주주소

성명

생년월일

성별 남.여

주민등록번호

대지

명

2. 업종별

3. 허가번호

허가년월일

4. 폐업년월일

5. 폐업사유

위와 같이 폐업하였기 신고합니다.

19 . . . . .

신고자 주소

성명

②

서울특별시 장귀하

첨부서류 : 1. 구허가증

<별지 제 11 호 서식>

휴업 신고서

1. 공장소재지

공장명칭

공장주주소

성명

생년월일

성별 남 여

주민등록번호

대지

평

업종별

2. 허가번호

허가년월일

3. 휴업기간

19 . .

.

.

부터

(

개월

일간)

19 . .

.

.

까지

위와 같이 양국가공업을 휴업코자 합니다.

19 . . .

신고자 주소

성명



서울특별시강서구

◎ 서울특별시에규제 362 호

대공업무성적평정요강

대공업무성적평정요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 경찰서 대공업무성적을 평정함으로써 직무의욕을 증진시키고 업무능율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이 요강에 대한 업무성적평정은 경찰서의 대공업무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 3 조 (평정기준) 평정은 업무수행실적과 능력을 평가분석하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

- 1. 간첩검거
- 2.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
- 3. 반공법 위반사범 검거
- 4. 안전대책 사범검거
- 5. 요시대상자의 탐지
- 6. 대공정보수집

7. 동작여건 개척

제 4 조 (채점기준) ①채점은 가점과 감점으로 나누며 산출은 발표1 "대공업무성적평정기준"에 의한다.

②권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행사 등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한 업무에 대하여는 동 업무를 별도 평정 채점할 수 있다.

제 5 조 (평정방법) 평정은 매분기말 기준으로 하되 매분기 익월 10일 까지 평정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평정방법) 업무의 평정은 경찰국의 주무계장이 하고, 정보 2 과장이 확인한다.

제 7 조 (시상) 평정결과 우수경찰서에 대하여는 표창한다.

부 칙

이 요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 <u>대공업무성적평정기준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종	별	기	준	단위	득점	감점	비	고																						
간	첩	검	거	생	포	인	300	검	거																					
				사	살	당	300			서	(자																			
				자	작	검	300					수	포																	
				간	거	거	150							합)	는															
첩	조	자		타	업																									
방	자	검				무	검																							
조	자	거						수	수																					
자	자	거								에	구																			
검	거	거		에	에																									
거	거	거				이	이																							
거	거	거						서	서																					
거	거	거								별	별																			
거	거	거		성	성																									
거	거	거				적	적																							
거	거	거						1	1																					
거	거	거								위	위																			
거	거	거		로	로																									
거	거	거				한	한																							
거	거	거						다	다																					
거	거	거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	보	사	법	검	거					국	가	보	안	위	반	전	당	100												
정	보	사	법	검	거	반	공			법	위	반	전	당	90															
안	전	대	책	사	법	검	거	처	리	20																				
국	가	보	안	위	해	분	자	유	연	비	어	조	작	유	포	자	검	거	20											
국	가	보	안	위	해	분	자	진	급	조	치	위	반	자	검	거	20													
대	공	공	작	활	동	공	작	참	보	(본	부	및	본	국	승	인)	20													
대	공	공	작	활	동	하	밍	사	건	종	결	1																		
행	불	자	탐	지	활	동	과	익	수	행	불	자	탐	지	(1	-	1)	명	당	10										
							일	반	요	시	활	인	탐	지	(두	어	지)	20												
							경	호	요	시	활	인	탐	지	20															
대	공	업	무	연	구	본	국	상	보	전	당	10																		
대	공	업	무	연	구	(	창	안	사	항)																				
간	첩	검	거	활	동	때	만	50																						
정	보	사	법	검	거	활	동	때	만	20																				
대	공	공	작	활	동	소	출	공	작	참	보	기	준	미	달	월	10				기	준	:	대	공	업	사	법	1	건
								공	작	여	진	기	준	미	달	10											기	준	:	공
행	불	자	발	생	과	익	수	행	불	자	명	당	5																	
					일	반	요	시	행	불	자	20																		
					경	호	요	시	행	불	자	20																		
정	기	보	고	소	출	월	보	지	연	전	당	5																		
						분	기	보	고	지	연	5																		
						중	요	사	항	보	고	지	연	및	오	보	10													

사 령

○ 1977. 7. 5

통계담당관 지방행정실 임영희  
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

세정과 지방행정실 김영철  
사무관 사 무 관  
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

기획담당관 지방행정사 안극수  
주 방 행 정 사  
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

안극수  
별정직 지방3을 상당에 임함.

제 14 호봉을 급함.

총무과 (제 1 부시장실) 근무를 명함.

○ 1977. 7. 8

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정철식  
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

정철식  
별정직 (지방3을 상당)에 임함.

13 호봉을 급함.

총무과 (시장실) 근무를 명함.

○ 1977. 5. 10

부녀사업관 지방행정 이종애  
주사시보

지방행정주사에 임함.

부녀사업관 근무를 명함.